

#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)

발의연월일: 2019년 12월 17일

발 의 자: 김용석, 이병도, 성흠제,  
이광호, 채유미, 문장길,  
노승재, 채인목, 정진철,  
김종무, 장상기, 추승우  
의원 (12명)

의안 번호	1228
----------	------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성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(안 제3조제3항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해당사항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4조에 따른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3조(자격 및 선임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이 경우 의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검사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